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총액인건비제팀의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디지털소통팀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정원 8명(7급 6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6급 6명, 5급 2명) 조정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제7조제7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25호를 삭제한다.

16.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상수도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상수도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제38조제2항 중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을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을 “57”로 한다.

별표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다음에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을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한다.

별표 1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2”로 한다.

환경부령 제5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4년 8월 3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6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4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7의 정원 8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명,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명)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감사관) ① · ② (생 략)	제2조의2(감사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③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 동감사</u>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 동감사</u>	<u><삭 제></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⑥ (생 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물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⑦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 항</u>
<u>16. (생 략)</u>	<u>17. (현행 제16호와 같음)</u>
⑧ 물이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⑧ ----- -----.

1. ~ 24. (생 략) 25. <u>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u> ⑨ ~ ⑰ (생 략)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 ~ ④ (생 략)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u>국립공원관리공단</u>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 12. (생 략) ⑥·⑦ (생 략) 제28조(유역관리국) ① ~ ④ (생 략)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⑥·⑦ (생 략)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생 략)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u>제4호의2 및 제4호의3</u>	1. ~ 24.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⑨ ~ ⑰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u>국립공원공단</u>----- ----- 3. ~ 1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유역관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상수도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u> ⑥·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4호의2부터 제4호의4-</u>
---	--

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관리과장이 분장한다.

1. ~ 4의3. (생략)

<신설>

5. ~ 17. (생략)

③ ~ ⑤ (생략)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과학
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환경
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국립
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
과장,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
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강
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상수도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5. ~ 1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
구소장-----

-----.

환경부령 제5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2년 8월 31일</u>까지 존속한다. ②·제3조 (생략)	환경부령 제5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24년 8월 31일</u>-----. ②·제3조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6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기후체제대응팀은 <u>2022년 8월 31일</u>까지 존속한다. 1. (생략)	환경부령 제6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24년 8월 31일</u>-----. 1.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u>2</u>	· · <u>4</u>	+2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 · <u>3</u>	· · <u>7</u>	+4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63</u>	· · <u>57</u>	-6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 연구관 · 보건연구관</u> 또는 <u>환경연구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 · <u>2</u> · ·	· · <u>3</u> · ·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u>3</u> · ·	<u>2</u> · ·	-1